**행정적 분쟁 해결**

일자: 2004년 09월 01일

정책 ID # EXT-001

상태: 최종

정책 유형: 본 대학교

연락 사무실: 기회 균등 및 민권 사무실

감독자: 본 대학교 총장

적용 대상: 학술 분과, 의료 센터, 와이즈 칼리지.

**목차:**

[정책 강령](http://uvapolicy.virginia.edu/policy/EXT-001%22%20%5Cl%20%22Statement)

**정책 도입 사유:**

버지니아 주 행정적 분쟁 해결법을 준수하기 위해. 해당 법은 모든 주 기관으로 하여금, 분쟁 발생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립적 절차 대신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에 기반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 해결을 승인 및 권장하는 정책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**강령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:**

**행정적 분쟁 해결:** 일반적으로 중립적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및 요구 사항을 다루는 대안적이고 비대립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**중재인:** 중재인: 분쟁 해결 절차 진행이나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. 당사자들이 합의나 해결에 이르도록 돕는 것 외에는 해당 분쟁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.

**분쟁 해결 절차:** 중재인이 개입하여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구조화된 절차를 의미합니다. 분쟁 해결 제도에는 조정, 화해, 촉진, 파트너링, 사실 조사, 중립적 심사, 옴부즈맨 의뢰, 그 밖에 자발적 합의를 도모하는 기타 절차가 포함됩니다. (중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
이 같은 [절차](http://eocr.virginia.edu/mediation%22%20%5Ct%20%22_blank)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.

**정책 강령:**

본 대학교는 본교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협력, 중재인의 도움 및/또는 상황에 적합한 기타 자발적 절차나 개입을 통한 행정적 해결을 승인 및 권장합니다. 이 같은 해결이나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들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, 본 대학교에 대해서는 (a) 본교의 정식 담당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고 (b) 본교의 정책 및 주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구속력이 있습니다. 본 정책이 주법상 금지되는 중재나 단체교섭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.

본 대학교는 주 기관 간 분쟁 해결 자문 위원회와 협력하며 필요시 도움을 제공합니다.

본 정책은 본 대학교의 다른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도 개정 혹은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본 대학교가 본교의 정식 대리인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 분쟁 해결에 관여할 권리, 행위, 의무, 기대를 형성하지도 않습니다.

본 대학교는 [분쟁 해결 코디네이터](http://eocr.virginia.edu/%22%20%5Ct%20%22_blank)를 지정하였으며 그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본 대학교의 정책, 절차, 규정을 검토하는 한편, 자발적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을 승인 및 권장하는 목적상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.
2. 본 정책 시행에 관여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.
3. 충분한 교육이나 경험을 보유한 중재인에게 의뢰합니다.
4. 주 기관 간 분쟁 해결 자문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 본 대학교의 연락 담당자로 일하면서, 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본교의 참여를 지원합니다.

**관련 정보:**

대안적 분쟁 해결이나 중재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[본 대학교 옴부즈맨](http://eocr.virginia.edu/ombuds%22%20%5Ct%20%22_blank)에게 연락하여 담당자 및 진행 방법에 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